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 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 
2020. 12. 7.(월) 10:00

제225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**  
(복지가족국 소관)



**복지건설위원회**  
전문위원 추병수

#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023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1. 17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2021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(안)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성액 ㉠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1년도말 조성액 ㉡=㉠+㉢-㉣	증 감 ㉢=㉡-㉠
		수입㉢	지출㉣		
양 성 평 등 기 기	399,075	7,800	6,120	400,755	1,680

## 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」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기금 개요

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,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」 제2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 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임.

### ○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

· 수입내역	
- 공공예금 이자수입	7,800천원
· 지출내역	
- 공모사업비	5,000천원
- 심의위원회 수당	1,120천원
<b><u>총 612만원임.</u></b>	

- 본 기금안은 양성평등의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사업 등 수행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, 현재 기금의 이자수입에 의지하여 사업이 운용되고 있으므로, 본 기금 설치 목적에 적정한 사업 증대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## 관련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 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제142조 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

③ 제1항에서 "재산"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.

### 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(약칭:지방기금법)

[시행 2020. 6. 9.] [법률 제17388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기금"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

다만,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제외한다.

[전문개정 2011.5.30.]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전문개정 2011.5.30.]

### 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 [시행 2020. 11. 20.] [법률 제17284호, 2020. 5. 19., 일부개정]

제42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의 출연금
2.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3. 기금의 운용수익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**제43조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
2.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
3.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

**제51조(비영리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**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, 양성평등 문화 확산,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[사행 2020. 9. 22] [대통령령 제31029호, 2020. 9. 22, 일부개정]

**제27조(기금의 용도)** 법 제43조제4호에서 "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
2.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
3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□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」

**제22조(기금의 설치 및 재원)**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용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기타 수입금

**제24조(기금의 용도)**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한다.

1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
2.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
3.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
4.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,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.

**제2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**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계획변경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
3.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에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제2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심의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제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
2.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

⑤ 심의회 위원의 임기·위촉 해제·위원장의 직무,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, 구금고에 예치·관리하여야 한다.